



“ 인증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세부요령등 고시개정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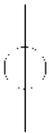
◎ 개정요지

□ 인증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세부요령등 고시개정

- 별지 4호 서식 제품인증기관평가점검표 다음에 「KAS 인정을 위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삽입함
내용은 조직,운영,평가등 15개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인증기관이 제조자의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을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지?
인증활동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
내부감사와 경영진도 기록은 KAS의 요청시 제공이 가능한지? 등
약 300개항목의 체크리스트 제정

□ 교육기관의지정기준및운영요건에관한세부요령고시개정

- 1.목적에서 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내부감사자,시험· 검사요원을 인증기관직원으로
다른 고시와의 부합화로 개정함.
- 2.1.평가사,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내부감사자,시험· 검사요원을평가사 및 인증기관
항을 비치는 인증기관 직원
- 3.3.3 KSA 10011-1을 KSA ISO 19011로 개정
신규규격제정에 의한 부합화임.
- 5.2.1(2) ISO/IEC Guide 61, ISO/IEC Guide 65, ISO 9000시리즈, ISO 10011
을 KSA ISO Guide 61, KSA ISO Guide 65, KSA ISO 19011 로개정
- 5.3.1 (3) KSA 8402 와KSA 9000 및 10011을 KSA 9000 및 ISO 19011로 개정
- 5.4.1 평가사,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내부감사자 및 시험· 검사요원 과정을 평가
KSA ISO Guide 65 과정으로 개정
- 5.4.2 (3) KSA/ISO 9000,KSA/ISO 10011 시리즈규격 및 적용지침을 KSA ISO 1
리즈 규격 및 적용지침로 개정
- 5.4.3 삭제
과정별이 삭제가 되고 인증기관 직원으로 통합 되었으므로 필요가 없어서 삭제함





- 5.5.2 ~4-월에 걸쳐 36시간 이상(단,기술· 품질책임자 및 시험· 검사요원 과정은 24시간 이상,내부감사자 과정은 24시간 이상)을 평가사는 4~5월에 걸쳐 36시간 이하로, 인증기관의 인증가부를 결정하는 직원은 20시간 이상으로 개정
- 5.5.5 KSA 10011을 KSA ISO 19011로 개정
신규 규격체장에 의한 부합화로 개정함.
- 5.6.1 단,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내부감사자 및 시험· 검사요원 과정은 교육생수를 이하로 할 수 있다.를 인증기관의 가부를 결정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생수 명 이하로 할 수 있다.
앞으로 제품인정의 확산조짐이 기대되므로 시급한 교육수요에 대처하는 이에 기준개정이 필요함.
- 6.3 (1) ISO/IEC Guide 65 및 인정· 인증제도와 관련한 ISO 9002 내용 적용을 ISO Guide 65 및 IAF 해설지침에 대한 내용 적용
“ 제품인증기관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요령”에서 부합화. 끝. ●

